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200070

신청인: (주)메디씨앤씨

피신청인: (주)메디게이트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주)메디씨앤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빌딩 6층 135-958

대리인 : 특허법인 하나 (담당변리사 이소정)

피신청인: (주)메디게이트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8-50 엘리트빌딩 10층 120-833

분쟁 도메인이름은 "medigate.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2. 6. 18.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2. 6. 18.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2. 6. 21.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2. 6. 2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 6. 21.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 게 발송하였고, 2012. 6. 21.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2. 7. 11.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2. 7. 11.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 통지를 2012. 7. 12.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2. 7. 12. 센터는 최성준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2. 7. 13.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2. 7. 13.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의료장비중개업, 의료장비 도매업, 의료장비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여2000. 9. 1. 설립된 회사로서(신청인은 2004. 2. 11.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광고업, 교육강좌업 등을 목적에 추가하였다), 위 회사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1999. 1. 12. 등록된 도메인이름 medigate.net(이하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으로 1999. 4. 1. 개설된 웹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의사들의 사이버(온라인) 커뮤니

MEDI:GATE

지의 좌측 상단에는 " "라는 표시가 있고, 위 웹사이트 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 및 광고, 각종 의료학술 정보 나눔, 개원의 및 개원예정의를 위한 개원 강좌 등 각종 연수강 좌 소개,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가전제품 등에 관한 쇼핑몰 운영, 게 시판(의사들의 이야기) 운영, 의사 초빙구직, 임대분양몰 운영, MG Partner라는 명칭으로 대출몰, 세무/인사노무, 인테리어, 법률상담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위 웹사이트의 회원은 의사들 및 의대생들인데, 회원수는 1999년 4,447명, 2000년 38,665명, 2001년 44,574명이었고, 2011년에는 77,976명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외 활동 의사들의 약 90%에 이르는 사실, 1999. 4. 9.부터 2001. 6. 2.까지 2 년 남짓 기간 동안 위 웹사이트의 게시판에는 87,324개의 글이 등록 된 사실, 2009. 1.부터 2012. 4.까지 위 웹사이트 방문수는 23,743,633회이고, 방문자수는 2,947,245명이며, 페이지뷰수는 224,922,238뷰인 사실, 위 접속자의 90% 이상이 의료종사자인 사실, 신청인은 2000년에 "MediGate"라는 제호로 magazine of cyber doctor's community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5,000명의 의 사가 만들고 있는 인터넷 최대의 Doctor's Community, MediGate'라 는 표현과 함께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곳곳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신청인은 2002년에 위 웹사이트(MEDI GATE)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대한민국 의사 4만의 사이버 공동 체', '4만 의사들이 만들어가는 의료 네트워크 중심 -MEDIGATE', 'MediGate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로 의사들의 의료 관련 네트웍 뿐 아니라 생활의 명실상부한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MediGate는 4만여 회원이 거의 매일 1회 이상 방문하여 의료관련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MediGate와의 지속적인 communication을 통하여 의사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싸이트입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위 웹사이트의 회원

수가 49,500여명(의사 회원 40,000, 의대생 회원 9,000), 일일 평균 접속자 26,000명, 폐쇄 및 일반 동호회 1,200개라고 설명하면서, 위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업무 및 행사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 는 사실, 2005년에도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발간하였 는데, 그 내용 중에 위 웹사이트의 회원 82,612명 중 일반인 및 의대 생 회원 28,212명을 제외한 의사회원은 54,400명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62.500명의 87%가 메디게이트 회원이고, 위 웹사이트의 하루 평균 접속자는 9,000여명이고 1인당 평균 체류시간은 36분이 며, Key Contents는 생각나눔(자유게시판, 1,500개의 온라인 클럽 등), 정보나눔(뉴스, 구인구직, 연수강좌, 의료정보 등), 재미나눔 (만화, 책, 음악, 문화공연정보 등)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또 한 2010년에도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의사선생님의 90%가 메디게 이트 회원이십니다(2010년 3월 현재)', '2010. 1. 의사회원 71.000명 돌파)'라는 표현과 함께, 위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 뉴스, 초빙구직, 연수강좌(Community), 의약품 및 의료장비 온라 인 마켓팅 서비스(e-Marketing), 의료업종 배너광고, 제약사 CI 광 고(Advertising), 의사대상 온라인 서베이(Research) 등을 나열하고

MEDIGATE

MEDI:GATE

있는 사실, 신청인은

및 에 관하여 2004. 4.

8.,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99474호 및 제99482호로, 지정서비스업을 금융투자주선업, 대부업, 건물분양업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99475호 및 제99483호로, 지정서비스업을 의약품판매알선업, 마켓팅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99491호 및 제99493호로 각 서비스표등록을 한 사실(각 서비스표등록출원일은 2003. 3. 12.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1. 26. 설립된 회사로서, 2001. 6. 19.에 등록

된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의료포털사이트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운영하고 있는데(언제부터 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운영하기 시작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응 2010년경 이후로 짐작된다), 위 웹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고, 위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좌

측에는 **"MEDIGATE** 라는 표시가 있는 사실, 위 웹사이트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쇼핑몰 또는 공동구매(MEDIGATE Mall) 운영, 병원 매매, 임대, 분양, 개원의 대출, 개원 컨설팅, 병원 홍보, 세무자문, 인테리어 상담, 의사초빙, 학회 및 세미나 안내, 블로그 개설 서비스, 게시판 운영, 의료 전문 방송 매체 KT 메디프레임 서비스 운영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및 신청인의 위 각 등록서비스표는 의료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와 매우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아 의료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분쟁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도메인이름과 그 서비스 소스가 동일한 것으로 오인, 혼동되도록 사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다른 웹사이트로 유인하고 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직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에 의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 였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A.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여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늦어도 2000. 9. 1.부터 신청인의 도메인이름(medigate.net)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MEDI:GATE

영하면서 MediGate, MEDI GATE, 를 각종 의료 관련 서

MEDIGATE

비스를 제공하는 표지로 사용하여 왔고, 신청인은

및

MEDI:GATE

에 관하여 2003. 3. 12.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2004. 4. 8. 서비스표등록을 한 등록서비스표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1년경 이미 신청인 의 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및 그 명칭인 MEDIGATE가 의 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들 에게도 꽤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은 medigate, MediGate, MEDIGATE 표지 및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쟁도메인이름의 2단계 medigate는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위 표지들 및 등록서비스표들과 동일하거나 철자 전부나 일부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의 차이 또는 MEDI와 GATE 사이에 :이 없다는 차이 정도가 있을 뿐이다.

결국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서비스표와 동 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분쟁 도메인이름의 2단계 medigate는 어떠한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이고, 다만 의료 관련 서비스와 연관시켜 볼 때 medigate가 medical의 앞부분인 medi라는 단어와 문, 정문을 의미하는 gate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인식될 여지는 있으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medigate라는 단어를 손쉽게 만들어 낼수 없을 뿐만 아니라 medigate가 의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이 예상되는 단어라고 할 수도 없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피신청인의 상호가 주식회사 메디케이트이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DIGATE가 신청인의표장으로 의료 분야에서 주지성 내지 저명성을 취득한 후인 2010. 1. 26.에서야 피신청인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현재 의료 분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C.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1. 26. 설립되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2001. 6. 19. 당시에는 피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따라서 (1) 피신청인이 법인화 되기 전부터 피신청인과 같은 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또는 피신청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람이 2001. 6. 19. 분쟁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가 피신청인이 설립되자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 메인이름을 이전하였거나, 아니면 (2) 피신청인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는 사람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가, 피신청인이 설 립된 다음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먼저 (1)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판단하여 본다. 2001. 6. 19.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람이 피신청인이 법인화 되기 전부터 피신청인과 같은 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또는 피신청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람인 이상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인은 의료와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상당한 관심과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최초 등록인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어 받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2)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판단하여 본다. 분쟁도메인이름 중 일부에 '의료의'라는 의미를 갖는 medical이라는 단어의 앞부분인 'medi'가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분쟁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의료 분야에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등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상호 및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의료와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상당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분쟁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2001. 6. 19.경에 이미 신청인의 도메인이름(medigate.net)으로 개설한 웹사이트 및 그 웹사이트의 명칭인 MEDIGATE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의료종사자들에게도 꽤 많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최초등록인은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의 존재 내지 그 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의 명칭을 알고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설립되어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2010년경에는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의약 90%가 이용하고 있었고, 그 전후 3년 4개월간 위 웹사이트 방문

자수가 약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의사, 의대생 그 밖의 의료종사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및 그 웹사이트의 명칭인 MEDIGATE는 의료 분야에서 주지성 내지 저명성을 취득한 상태이었다.

또한 3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medigate.net으로 10여 년 전에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medigate.com으로 최근에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고, 그 각 도메인이름의 1단계만 .net이냐.com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2단계는 완전히 동일하며, 각 웹사이트

MEDI:GATE

의 모든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있는



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료종사자도 양웹사이트를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그 신촌점의 주소가 피신청인의 주소와 동일한 세븐레마의원이 clicktalmo.com 도메인이름으로 개설

MEDI:GATE

한 웹사이트에서는 관련사이트 중 하나로

(이 표지는

신청인의 위 등록서비스표 및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의 매 페이지의 좌측 상단에 있는 표시와 동일하다) 배너를 게시하고 있는데, 위 배너를 클릭하면 피신청인이 개설한 위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이고 신청인이 오랫동안

MEDI:GATE

사용하여 와서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객들을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기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나 분쟁 도메인이름의 최초 등록인 및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및 그 웹사이트의 명칭을 알고 경

업자인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 하였거나 이전받았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즉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경업자인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려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온라인 장소에 등장하는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서비스표와 혼동을 야기할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로 유인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 소결론

결론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은 '규정'제4조 (a)항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medigate.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 을 결정한다.

> 최성준 1인 조정인

결정일: 2012년 8월 2일